

2013. 2. 5(화) 10:00

1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 보고서

【총무위원회】

【 목 차 】

1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4
3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7
4	거창승강기벨리 선도기업체 대체업체 유치 승인안 -----	10
5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	13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 01. 18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3. 01. 21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3. 1. 29

2 제안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감면기한 연장 및 일부 조항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인용조문을 정비코자 함.

3 주요내용

- 가.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3조)
- 나. 「식품산업진흥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 및 폐지에 따른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을 취득시점 기준으로 감면기한을 명확하게 설정함.(안 제6조)

다.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대상을 취득시점 기준으로 감면 기한을 명확하게 설정함.(안 제8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개정 조례안은 종교단체 의료기관과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및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간을 명확하게 하고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문을 수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3조에서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간을 2013년 12월 31일로 연장.
 - 2012년 12월 31일 ⇒ 2013년 12월 31일로 연장
 - 안 제6조에서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8조에서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사항으로 해당 농공단지 내의 부동산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함

- 이 개정 조례안은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일부 조항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개정 조례와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 01. 18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3. 01. 21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3. 1. 29

2.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 권고 및 행정안전부의 「민원수수료의 종이 증지 사용 폐지 방안」 추진에 따라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발행하는 제증명에는 전자 이미지화한 수입증지 표기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3. 주요내용

- 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발행하는 제증명에는 전자 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함.(안 제6조, 제7조제3항, 제16조, 제17조제2항·제3항)

⇒ 전자수입증지 발급 대상(시스템) 확대

- 종전 :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 추가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스템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민원수수료의 종이 증지 사용 폐지 방안」 추진에 따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발행하는 제증명에는 전자 이미지화한 수입증지 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6조에서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등의 사용 내용으로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급시스템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7조, 안 제16조, 안 제17조 등에서는 무인발급기·주민시스템을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등으로 개정하였음
- 이 개정조례안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등에서 발행하는 제증명에는 전자 이미지화한 수입증지 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개정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 01. 18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3. 01. 21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3. 1. 29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11호, 2012.9.21.)이 일부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요율을 표준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하여 반영하고, 일부 미비한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맞게 수수료 요율을 조정함(인상 20종, 인하 13종)(안 별표 1)
- 나.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수수료를 신설함(23종)(안

별표 1)

다. 수수료 징수 근거가 없거나 불명확하고, 조례로 정해진 사무에 대한 수수료 삭제(3종)(안 별표 1)

라. 수수료 징수대상 사무를 세분화하여 징수근거를 명확히 함(안 별표 1)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맞게 수수료 요율을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3조 별표1의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목록(기준) 중

○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맞게 수수료 요율을 조정함.

⇒ 인상 20종, 인하 13종

○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수수료 23종을 신설함

○ 수수료 징수 근거가 없거나 불명확하여 3종 삭제

○ 수수료 징수대상 사무를 세분화하여 징수근거를 명확히 함.

○ 이 개정조례안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요율을 조정하고 일부 미비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개정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거창승강기밸리 선도기업체
대체업체 유치 승인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 01. 22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3. 01. 22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3. 1. 29

2. 제안이유

- 제171회 거창군의회 정례회에 승인된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선도기업체 투자유치 지원계획(안)」에 따라 계약체결한 선도기업체의 투자불이행으로 인해 계약해지를 함에 따라 대체업체를 유치하여 성공적인 승강기밸리를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투자계획 이행 불가업체 (주)도하인더스트리 현황
 - 회사명 : (주)도하인더스트리
 - 소재지 및 대표자 : 김해시 진례면 송현리 11873번지, 김홍규
 - 계약당사자 및 체결일 : 거창군 ⇔ (주)도하인더스트리, 2011. 2. 11

○ 분양면적 및 업체 투자계획

투자위치	부지면적	투자금액	고용인원	투자기간	비고
거창일반산단 6BL,④⑤⑥Lot	23,836m ² (7,210.4평)	80억원	100명	2011.2월~2014	

○ 우리군 지원계획

지원분야	부지 분양가			비고
	합 계	자 체	보 조(거창군)	
입지보조금	2,189,527,279원	218,952,729원 (10%)	1,970,574,550원(90%) [기 지원 1,017백만원 잔 액 953백만원]	

- 투자이행 포기사유 : 회사 사정상 승강기 생산 전업률이 50%이상 불가
- 조치사항 : 기 체결한 계약서 해지(해제), 기 지원한 보조금 회수

나. 대체업체 현황 및 투자계획

- 회 사 명 : 동양메닉스(주), 서울 강서구 강서로 442(가양사옥 4층)
- 공 장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1-62
- 설 립 일 : 1992. 6. 25
- 대표이사 : 심재덕(종업원 63명)
- 기업분류 : 외감, 중기업
- 업 종 : C29162(승강기제조업)
- 기업신용등급 : bb-(보통이상)
- 신용흐름등급 : CR5(현금지급 능력이 보통이하)

다. 기존업체와 대체업체간 투자규모 비교

구 분	기존업체	대체업체	비 교
	(주)도하인더스트리	동양메닉스(주)	
투자금액	80억	179억	2배
고용인원	100명	80명	0.8배
부지면적	23,836m ² (7,210평)	42,285m ² (13,699평)	2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당초 유치업체인 (주)도하인더스트리 사가 회사 사정상 승강기 생산 전업률이 50%이상이 불가하여 2011년 2월 11일 체결된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대체업체 유치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 대체업체인 동양메닉스(주)는 투자이행을 포기한 (주)도하인더스트리 보다 투자금액이나 소요 부지면적 규모면에서 2배 이상이고 주차타워 부분에서 국내 2위 업체로서 협력업체 유치 기대 등 투자유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가 되어
-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완성에 미치게 될 영향이나 효과 등을 감안할 때 대체업체 유치안에 대해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 01. 25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3. 01. 25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3. 1. 29

2. 변경이유

- 2013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지산보건진료소 신축공사를 추진하여 군민이 만족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추진 중 이전신축 대상 부지 확정으로 변경.

3. 변경된 재산의 표시

○ 당 초

(단위:m², 천원)

구분	재산종별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시기	취 득 사유	재 산 소유자
		소 재 지	지목	면적				
			대	1,715	44,761			
	토지	거창군 남하면 지산리 904-1 일원	대	1,715	44,761	2013	지산보건진료소 이전신축	거창군

○ 변 경

(단위:m², 천원)

구분	재산종별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 격	취득 시기	취 득 사 유	재 산 소유자
		소 재 지	지목	면적				
		계		1,133	18,402			
취득	토지	거창군 남하면 지산리 905-5	답	1,054	17,391	2013	904-1번지와 교환	지산 마을회
취득	토지	거창군 남하면 지산리 903-1	답	79	1,011	2013	신규 취득 (진입로)	배병훈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남하면 지산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공사를 위한 부지로 당초 남하면 지산리 904-1(대) 1,715m²에 이전 신축코자 하였으나 본 부지는 기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을 설치, 현재 활용중인 게이트볼 장으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 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이 되어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지시된 바 있으며
- 당초 부지와 연접해 있는 지산리 903-1(답), 905-5(답) 1,133m²로 변경하여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 예산낭비 사례방지 등을 감안하여 변경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